

법원 “구하라父, 홀로 양육 인정…재산 60% 분할”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재산상속 관련, 홀로 양육한 아버지에 대한 기여분을 일부 인정해 재산의 60%를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규정이 없기,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하라를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에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구하라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구호인씨와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

“구하라 아버지만 장기간 양육…법정상속분 수정 필요성 커”
“실질적 공평 도모”…친모는 양육 안 했지만 40% 분할 판결
친오빠 “부양의무 게으른 자 상속 못받는 구하라법 통과를”

임이 있다. 자녀의 신체·정신적 발달을 위해 자녀를 보호·교양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가진다.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상대방으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양을 혼자 양육한 부분은 형평상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

며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판단했다.

구호인씨는 아버지가 동생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만큼, 재산 100%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소송과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를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소송과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를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구씨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벼 포대 추락 화물기사 숨지게 한 30대 2심도 무죄 왜?

“피해자, 포대 적재량·위치·방법 결정”



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황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0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 전남 담양군 미곡종합처리장 하차장에서 화물차 기사 B(67)씨가 대형포대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성군 모 협동조합법인 벼 건조 저장시설에서 지게차 운전과 벼

관리·배송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매도한 벼를 대형포대에 넣고, B씨의 25t급 화물차에 2단으로 적재했다.

B씨는 A씨의 운송 의뢰에 따라 담양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이동, 하차 작업 중 찢어진 하단 대형포대 위에 적재된 포대 1개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면서 사고를 당했다. 검사는 A씨가 대형 포대의 강도·봉제 등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제한 중량을 초과한 벼를 넣은 뒤 화물차에 적재(포대당 1t 가량)한 실수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

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1t의 쌀이 담긴 대형포대(중량 제한선 800kg)를 지게차에 매달고 이동·상차하는 과정에서 포대가 찢어지지 않은 점, 중량 제한선은 정부가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이는 점,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재활용할 포대를 선별할 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형포대를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적재할 때 피해자가 포대의 총 적재량과 위치·방법 등을 모두 결정했다. 사고는 피해자가 포대를 2단으로 적재한 무렵부터 약 2시간 30분, 벼 건조 저장시설에서 출발해 42분 정도 운전한 뒤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하차를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직원에게 손상된 포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하차 담당 직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약 15분이 경과한 뒤 포대가 제거된 점을 종합하면 A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대형포대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국 추정 ID, 누드사진 올려” 기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

기사 말미에 “ID 소유자,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알림 기능에 관한 질의와 글로벌 남성 잡지의 표지 사진 등이었다’며, “해당 ID 소지자는 지난 2018년 5월 13일 ‘2017 맥심녀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이 업로드 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기사 말미에 “해당 ID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알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기사 내용과 달리, 그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 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

은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의 알림 기능에 관한 질의와 글로벌 남성 잡지의 표지 사진 등이었다”며, “해당 ID 소지자는 지난 2018년 5월 13일 ‘2017 맥심녀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게시물이 업로드 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기사 말미에 “해당 ID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알렸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기사 내용과 달리, 그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 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



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써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게 확인한 적도 없고,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왔다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며 “이 기사의 원출처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고소를 접수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초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